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간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언론중재」로 자리매김 하기

윤 경

사법연수원 교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Thomas Jefferson은 Edward Carrington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인민의 의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적은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The basis of our governments being the opinion of the people, the very first object would be to keep that right: and were it left to me to decide whether we should have a government without newspapers, or newspapers without a government, I should not hesitate a moment to prefer the latter).

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원초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본능적, 원초적 욕구에 기초한 인간의 표현행위는 인격의 자기완성으로서의 표현, 자아의 충족, 순수한 자아의 발현이고, 자기 존재감의 실현행위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자유롭게 토론되었을 때에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뉴욕타임즈 판결(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에서 판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대단히 감동적이다. : 「잘못된 진술은 자유로운 논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가 생존에 필수적인 “숨쉬 공간(breathing space)”을 가져야만 한다면 잘못된 진술도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the Founding Fathers of America)은 모든 질서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과 사상, 희망, 상상을 좌절시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과, 두려움은 억압을 초래하고 억압은 증오를 낳으며 증오는 안정된 정부를 위협한다는 것과, 부조리와 그 처방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과, 사악한 조언에 대한 적합한 처방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성의 힘이 공적 토론에 적용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을 만들었다.」

표현의 자유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숨쉬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efferson은 John Novell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예훼손은, 마치 아침이나 저녁 차 한잔이 이 자극제 없이는 소화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당시 언론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란 두 법익이 충돌할 경우 그 조정방법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衡量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 29 판결).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그 중요성

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시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 등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론은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감시하는 헌법적 수단이며 공직자들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널리즘에서의 상업주의의 격화로 무책임한 가십이나 스캔들의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고, 독자들의 지속적인 취미에 영합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가 일반화되는

등 언론매체의 부정적 영향 또한 점차 증대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사인 등의 대응도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사건이 많아지자 언론이 사실 확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초래할 수 있는 자유언론에 대한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염려하는 의견 역시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해대립을 가장 잘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이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을 통한 해결은 결과적으로 뒤엎힌 이해관계의 매듭을 칼로 잘라내는 것이지, 그 매듭을 자연스럽게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지 「언론중재」가 나아갈 길

회지 「언론중재」의 각 코너는 연구논문부터 국내의 판결 소개, 외국문헌 번역, 각종 언론 관련 통계 등 언론분야에 관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화된 계간지라고 할 수 있다. 회지 「언론중재」는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중요한 언론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보배이고 자산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지 「언론중재」의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식과 운영태도일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공정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지금까지 해 온 노력 이상으로 앞으로도 정진한다면, 또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지금까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소중한 계간지 「언론중재」의 가치 역시 증대되고 발전할 것이다. □

「언론중재」, 이제 국제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

유재웅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장

제작년 가을, 프랑스 파리로 출장 갔을 때의 일이다. 한국의 언론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모 국제언론단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여러 주제로 담소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한국의 언론제도와 언론 상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가 발전해 한국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에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척 새롭다는 듯, 제도의 탄생 배경과 활동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흥미로워했다. 그는 우리의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외국어 번역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언론중재」와 우리의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간략히 번역해 보내주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법제도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지만,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나 언론사 입장에서나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론중재제도가 1980년에 제정, 시행된 '언론기본법'을 모태로 탄생한 관계로 오랜 기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로 인식되어왔다. 또 언론계에서는 언론피해구제의 핵심 중 하나인 '반론보도' 게재를 '정정보도'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해 마치 보도가 잘못됐다

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반론보도'는 어디까지나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해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여론형성의 장에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언론사가 언론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만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반박 기회를 주자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근본 취지인데도 이러한 점이 상당기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여왔다.

또한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오랜 논란이 있어왔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가 접수돼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및 중재를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언론사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점 역시 우리의 언론중재제도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이고, 언론중재제도란 제3의 조정 틀을 거침으로써 실질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피해구제율은 상당하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 있다하겠다.

우리의 언론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직무 및 조정·중재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등이 언론중재위원회 출범 이후 25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극복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그간 실질적인 활동으로 언론중재제도의 효용성을 보여주었고, 각계의 여론 수렴 노력을 거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언론중

재법을 마련했으며 직무가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여왔다. 이는 언론중재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국회, 정부의 공동노력의 소산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언론중재」지의 역할도 자못 컸다고 하겠다.

「언론중재」지는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발행되어 이제 지령 100호가 되었다. 말이 25년 이지, 그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회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 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다 의미있는 것은 「언론중재」지가 알찬 내용으로 언론중재제도를 인파에 널리 알려진 홍보의 전령이자, 언론중재제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전문가, 관계자 등에게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왔다는 점이라 하겠다. 「언론중재」는 전문 학술지는 아니지만, 언론법제와 관련한 자료의 보고였다. 요즘이야 인터넷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국내·외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언론관계 판결과 해외언론 동향 등의 자료는 「언론중재」가 아니면 구해보기 어려웠다. 또한 언론법제와 관련한 국내의 각종 논문과 자료를 집약해서 소개해 주는 것도 매우 유용했다.

「언론중재」는 언론법제에 관심 있는 학도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언론학자들의 전문적인 글 이외에 언론인, 법조인 등 언론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필진들이 글을 게재함으로써 자칫 딱딱하고 이론적 접근으로만 흐르는 것을 피한 것은 일반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배려'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지는 현업 언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매체다. 「언론중재」를 통해 언론보도와 관련한 생생한 조정·중재사례 및 판례를 접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도 컸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중재」지의 그간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을 가치가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수준에 만족해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령 100호를 기점으로 「언론중재」지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점은 계속 살려나가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해외용 「언론중재」지를 발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이제는 국내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중재제도에 관심이 있는 해외 학계, 언론 관련 단체 등에게 우리의 제도 운영 노력을 알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로 된 해외용 「언론중재」는 준비기간을 거쳐 연 1회 정도 발간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발간 횟수를 늘려가는 방법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로 「언론중재」의 제작, 배포를 보다 확충하는 일이다. 지금의 언론중재위원회는 종전에 비해 그 위상과 임무가 크게 달라진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을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언론중재」의 발행부수와 배포대상을 넓혀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전자북 형태의 서비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로 「언론중재」지의 성격(identity)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시점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언론중재」지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언론법제와 관련된 정보제공 수단으로 유용했지만, 전문가와 일반을 모두 아우르는 많은 잡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언론중재」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문가들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반 독자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 집단을 모두 겨냥한다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칫 두 집단 모두로부터 공감을 받기 어려운 점도 향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지금의 「언론중재」를 대중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미디어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전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핵심 타겟에 맞는 제2의 미디어를 창간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모쪼록 앞서 언급한 이야기들이 「언론중재」의 발전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언론중재」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언론현장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회지 되길

정 동 우

동아일보 부국장급 전문기자

현업 언론인들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어떨까. 아마도 ‘도움을 주는 곳’, ‘우호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감독기관’, ‘시어머니 같은 존재’, ‘귀찮은 곳’이라는 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겠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할 때마다 해당 언론사에 통보가 가고 소속 부서장이 중재부에 불려가기 때문이다. 일단 신청이 되면 해당 기자는 취재 경위와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데스크에게 보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도 들어야 한다.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출발부터 언론 현업 종사자들과 친해질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5공 정권이 언론통제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언론기본법을 만들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5공 언론정책 = 언론기본법 =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다소 무리한 등식이 생겨나버린 측면도 있다. 따라서 당시 언론인들 사이에는 언론중재위원회는 5공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일반 시민들을 상

대로 ‘언론피해구제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일선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부추김으로써 문제를 만든다’는 식의 인식을 가질 여지도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출범 시기쯤에서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한 필자의 당시 인식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출범 배경이 무엇이었던 이 기관이 한국 언론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취재와 보도에 있어 보도 대상자의 명예보호라는 법 의식을 심어준 것이 그것이다.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일선 취재현장의 기자들은 취재 활동과 기사작성에서 ‘중재’나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기사를 게이트키퍼 하는 차장, 부장 등의 데스크들은 일선 기자들보다 인격권 보호 의식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언론사의 데스크들은 기자들이 보내온 기사를 보도 대상자의 입장에서 서서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생기기 전, 언론사나 언론보도 피해자나 피차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을 때 언

론이 보도대상자의 실명과 사진을 마구잡이로 써 대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변화가 온 셈이다.

더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피해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및 중재 과정을 통해 한번 걸러줌으로써 기자들이 민·형사 법정에서 쓰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아준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기관의 형태여서는 안 되며 민간 자율 규제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해온 '역할'에만 국한시켜 생각할 때 그러한 기여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제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온 기간지 「언론중재」가 이제 발간 100호를 맞았다. 「언론중재」는 매회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과 윤리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언론학자나 법조인들의 논문과 학문적 탐구를 게재하고 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판결 동향과 판례 소개, 해외 언론법과 판결 동향 그리고 각종 자료 등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현업 언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필자는 「언론중재」를 매회 구독하면서 안타까움 비슷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다. 이러한 내용을 일선 기자들 모두가 읽고 숙지했으면 좋을텐데 라는 느낌이 그것이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일선 기자들에게는 아직도 명예보호 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자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기사가 당사자의 반론도 없이 보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존 신문과 방송도 그렇지만 특히 인터넷 언론이나 시민 저널리즘 등 새로운 매체에서 이러한 사례는 더욱 자주 발견된다. 「언론중재」를 매회 읽기만 해도 피할 수 있는 실수들인 것이다.

이제 언론은 더 이상 권력기관도 아니고 독자와

시민에게 위압적인 존재도 아니다. 독자와 언론은 대등한 관계에 있거나 언론이 독자에게 봉사하는 관계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언론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특정인물의 명예를 결과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오직 법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은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의 3대 기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대개의 경우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취재 보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 경향을 늘 주시해야 하고 「언론중재」를 읽어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면 「언론중재」는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잡지일까. 아니다. 필자는 「언론중재」가 100회를 즈음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언론관계 전문지를 표방하면서도 스스로 언론인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다. 언론인의 입장에서 「언론중재」를 읽어보면 이것이 언론인을 위한 잡지인지 정부 기관지인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

정부 기관지가 흔히 그렇듯이 내용 구성과 편집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판자의 입장에서 언론인과 언론피해자를 중재하려는 자세만 있을 뿐 언론인의 입장에서 취재보도의 현실과 법 사이의 갭을 메우고 중재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 현업 언론인들은 법원이 언론에 들이대는 잣대가 언론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언론에 책임을 물었을 때가 그랬다. 「언론중재」가 법과 법원의 입장에만 서서 언론 현업의 잘잘못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언론의 입장에도 서서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따져 보

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쳇말로 가끔씩은 고개 입장도 되어달라는 것이다.

둘째, 「언론중재」는 재미가 없다. 딱딱한 학술지로 만들려면 아예 학술진흥재단에 등록을 하고 전문 학술지로 나서야 한다. 학술지도 아니면서 매회 대학교수들 논문만을 잔뜩 싣고 있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교수들의 논문이 현업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과 현업에 대한 매도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현업의 이야기는 어쩌다 구색 맞추기로 한 두건이 실릴 뿐이다.

물론 「언론중재」가 언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언론학자와 언론관련 법조인들도 주요 독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언론 현업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현업을 배제하거나 홀대하는 편집 방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일 수도 있다. 언론 현업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 법조계와 학계가 언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제는 ‘찾아가는 교육’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아직도 일

선 기자들이 인격권 보호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언론사의 현행 기자 교육시스템에도 그 이유의 일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언론사가 입사시험에 합격한 기자들에게 수습 기간 중 1~2시간씩 인격권 보호에 대해 사내외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재교육 시스템이 없는 언론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편집 책임자를 불러 중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각 언론사를 찾아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명예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의구심도 많이 없어진 만큼 만약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장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가 시간을 내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특강 의사를 타진한다면 아마도 마다할 언론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특강 내용과 참석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지상중계 한다면 모든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언론중재」의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승을 빈다. □

언론법제 연구의 강화를

이 재 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의 계간지 「언론중재」는 언론법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필자에게는 필수품이나 다름 없다. 아마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호를 탐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언론중재론’ 등 언론법 관련 과목에서 「언론중재」

에 실린 논문들이 상당수 읽히고 있다. 이런 「언론중재」가 100호를 맞는다고 한다. 창간호가 나온 것이 1981년 겨울이니 지난 25년간 빠짐없이 연 4회를 발간한 셈이다. 일단 100회까지 출간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

「언론중재」는 지난 25년간 언론과 법 그리고 언론학과 법학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사실 언론과 법이 만나는 영역은 각기 다른 영역이 아니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보적인 영역으로 존재해 왔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의 독립적 연구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언론법제를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신문방송학 관련 학과에서는 언론법제를 거의 빠짐없이 가르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언론법제는 신문방송학 관련 학과의 필수과목으로 교육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언론법제 영역에 있어 「언론중재」는 풍부한 자료 제공자의 역할을 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언론중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왔다. 첫째는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법과 관련된 이론적·학술적 연구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과 법의 통로가 되는 전문 학술지로서의 역할이다. 이는 「언론중재」 전반부의 특집 논문과 국내 논문 그리고 기고와 외국논문 등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는 언론중재 및 언론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뉴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이다. 국내·외 관련 관례에서부터 국내·외의 관련 소식과 정보들이 이와 관련된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문 학술지로서의 「언론중재」의 역할이다. 「언론중재」가 비록 언론법제 연구의 교차로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언론법제연구에 기여했는가 하는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기 힘들다. 필자의 견해로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다루었지만 정작 언론법제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기여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창간호부터 지난 2006년 여름호까지의 집필자들을 분석한 결과,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글 전체 342건 중에서 123건(36%)이 언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69건(20%)이 법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법제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인 언론현업 종사자들의 경우 36건(10%) 그리고 판·검사, 변호사의 경우 83건(24%)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논문의 46% 정도가 언론계 시각으로 그리고 44% 정도가 법조계의 시각으로 작성되어 언론과 법의 시각이 고르게 나타난 편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창간호부터 1991년도까지 10년간의 「언론중재」의 경우 전체 130건의 논문 중에서 82건(63%)이 언론계 시각으로 쓰여졌으며 법조계 인사들에 의해서 쓰여진 논문은 38건(29%)에 그쳐서 언론계, 특히 언론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기회가 많았고, 논문의 주제들도 언론의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예를 들어 언론자유, 언론윤리, 사진보도, 공익, 폭로 저널리즘 등)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던 것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의 경우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언론계에 의해서 쓰여진 논문은 전체 135건의 논문 중 51건(38%: 언론학자 44건, 언론인 7건)에 그친 반면 법조계는 70건(52%)으로 이전 10년에 비해서 비율이 증가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 법조계의 시각이 더욱 많은 지면을 차지하였으며 논문의 주제도 법적인 해석을 많이 요구하는 것(예를 들어 정간물법 개정, 언론중재 운영방안, 정보공개와 알권리, 초상권, 사생활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논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77건의 논문 중 26건(33%)이 언론계(언론학자 19건, 언론인 7건)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43건(56%)이 법조계(법대교수 16건, 판사 17건) 인사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즉, 수적인 면에서 판단하건데 법적인 시각에서 언론의 문제를 바라보려는 것이 「언론중재」의 최근 경향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단순히 논문의 숫자로 어떠한 시각이 더욱 많이 반영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 변화의 추세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초기단계에는 「언론중재」에 언론학자들이나 전·현직 언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언론중재제도가 자율규제제도가 아닌 정부에 의해서 강제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언론자유의 침해라는 반발이 있었고 이를 무마하고 오히려 언론자유의 보호라는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언론계의 견해를 많이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다가 언론중재제도가 언론피해 구제제도로서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차 법조계의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언론중재에 대한 법조계의 논문의 기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언론계의 경우 언론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문 기고가 늘어나는 반면 기존의 저널리즘 일반론적 시각에서의 논문들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적인 것은 언론현업 종사자들의 논문기고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언론계 현업 종사자들의 논문기고는 첫 10년 동안은 22건이었으나 이후 15년간은 14건에 그치고 있어 현업종사자에 의한 참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은

논문 기고자 중에서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이용자가 기고한 논문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실제 언론중재제도의 경우 언론과 함께 이용자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개선사항 등을 기술하는 논문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언론중재제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의 논문도 같이 게재하여 지상토론 등을 통하여 「언론중재」의 이론적인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학술적 연구의 영역을 강화하여 중재제도와 관련된 이론적인 바탕을 공고히 해서 외국의 경우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론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거의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이거나 비전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균형성 있는 접근방법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이를 발표할 수 있는 저널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언론중재」가 이러한 역할을 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논문을 청탁하는 것과 아울러 연구를 공모하고 이 연구들을 제대로 논문화해서 신는 작업을 앞으로 200호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100호까지의 「언론중재」 업적을 발판으로 삼아서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탈바꿈의 시도를 바란다. □

「언론중재」는 국내 유일의 ‘언론법제’ 종합전문지

한 동 원

전(前) 한국언론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회 회지 「언론중재」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창간호부터 지난 25년간, 쉽 없이 달려와 100호 발간을

맞이하게 된 회지 「언론중재」는 이론과 실무를 깊이 있게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언론법제 종합전문지’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1981년 겨울에 발간된 창간호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06년 여름에 발간된 99호를 처음으로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졌고, 99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회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낱알이 발전해온 내용과 편집, 디자인의 변화에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달리 느껴지는 금석지감(今昔之感)은 「언론중재」를 창간한 당사자이자 1990년 여름호(제35호)까지의 편집인으로 있었던 탓일까. 창간 초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 25년의 시공(時空)이 보여준 현격한 차이는 마치 달구지와 자동차를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돌이켜 보면 「언론중재」가 창간된 1980년대 초반, 한국의 언론학계와 언론계, 법학계와 법조계는 ‘언론법제’에 관한 한 황무지였다. 그리고 언론인과 언론수용자들에게는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나 그에 대한 피해의식조차 없었던 시기였으니 초기 「언론중재」의 무게가 가볍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 자료창고에는 몇 건의 필화사건 관련 판례가 있었을 뿐 언론에 의한 피해사건 판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따라서 초기의 「언론중재」에는 언론과 관련된 국내 판례를 수록해서 소개할 수가 없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과 미국, 독일, 영국 등의 판례와 평의회 사례 등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언론학 교수 중에는 ‘언론법제’를 전공한 교수도 전무했다. 그러니 대학의 신문방송학과에 제대로 된 ‘언론법제’ 커리큘럼(curriculum)도 있을 리 없었다. ‘언론법제’에 관한 단행본이나 연구논문조차도 별로 없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 언론학을 연구하고 학위까지 받아 귀국한 교수들에게

「언론중재」에 게재할 원고를 청탁하면 거의 모든 교수들이 거절했다. 국내에서 학위를 한 교수들도 다를 바 없었다. ‘언론법제를 공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지식도 없어 쓸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기야 ‘언론법제’ 분야는 언론이론과 법률이론의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학문분야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법률이론에 취약한 언론학 교수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궁여지책으로 법률학 교수에게도 원고 청탁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허사였다. 언론학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언론학 이론을 모르니 법률 이론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거절이유였다. 법조계와 언론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고 국내 유일의 언론윤리 자율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실적도 1970년대 중반쯤부터는 미미한 상태여서 「언론중재」에 게재할만한 평결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초기의 「언론중재」는 극심한 원고난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물론 초기의 「언론중재」 편집진이 새로 도입된 언론중재제도나 ‘언론법제’에 생소했다는 점도 큰 원인이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학문으로서의 ‘언론법제’의 부재가 회지 「언론중재」를 알차게 출범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다. 그래서 창간호는 질량면에서 98쪽의 빈약한 미숙아로 태어났고, 그 미숙아는 상당 기간 부실한 상태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 100호를 맞는 오늘, 「언론중재」는 한국의 ‘언론법제’를 학문적으로, 제도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궤도에 올려놓는데 초석이 되고 동력이 되었음을 자부하고 자긍심

을 가져도 좋을 만큼 알차게 성장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 시각이 198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중재사례와 판례가 축적되었고, ‘언론법제’가 뜨는 학문으로 관심을 끌면서 교수, 법조인, 언론인들의 연구와 언론학과 학생들의 전공도 활발해졌고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회지 「언론중재」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요긴한 자료로 활용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까지 해왔다. 그리고 각 대학 언론 관련 학과에서는 거의 유일한 보조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언론중재」는 미숙아에서 우량아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언론법제’가 학문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오늘의 위상에 오르기까지, 「언론중재」가 큰 기여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나의 관점에서는 「언론중재」가 그런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서는 「언론중재」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 등을 주문

할만한 탁견(卓見)이 없다. 다만 100호 발간을 맞는 「언론중재」와 한국의 ‘언론법제’의 충실한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두 가지 제언을 해두고자 한다.

첫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는 대부분의 경우 취재 대상 또는 기사 등장인물의 이름을 밝히거나 간접적으로 특정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익명보도’의 한계문제는 모든 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의 근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익명보도’의 한계를 케이스별로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면 좋겠다. 일반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 심층화된 주제의 설정을 바란다.

둘째, 우리나라의 ‘언론법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언론법제 이론, 언론 관련 판결과 판결경향, 평의회 평결사례, 외국 언론들의 보도 침해 사례와 피해 회복방식, 언론 피해자들의 대응방식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과 수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회지 「언론중재」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언제나 발전하고 변모하는 회지 「언론중재」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

소통의 공간으로 우뚝 서는 「언론중재」

박 형 상
변 호 사

계간 「언론중재」 지령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날로 창대해진 길이였다고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계간 「언론중재」의 역

사가 곧 한국 언론법제의 역사일는지 모릅니다.

우선 계간 「언론중재」가 그간에 기여해 온 노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계간 「언론중재」

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독특한 기능과 한국 언론법제의 독자성 측면에 대한 계도, 언론 관련 반론 사건 및 기본 판례의 소개, 현업 언론 종사자들의 취재·보도윤리 및 법 의식제고, 언론 자유의 양면성 등에 대해 그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간 「언론중재」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론의 장’ 역할 부분입니다.

지난번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지만, 한국 사회에 있어서 ‘공론의 장’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로지 자기쪽의 당파적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학자’와 ‘전문가’를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일방적 선전만 있었습니다. 계간 「언론중재」는 이러한 사회적 시류에 쉽사리 쏠리지 말고 학문적 토론이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안 된다고만 말할 뿐인 이른바 보수파진영’, ‘밀어붙여 놓고 보자는 이른바 개혁파진영’의 양극단간의 대립만이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딱한 현실 속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계간 「언론중재」가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제3의 대안세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제론적 교섭 영역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공동체의 온갖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언론법 영역이야말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학문 교제론적 접근이 요청됩니다. 이런 학제론적 기반에 관한 각 분야별 뒷받침이 튼실해 질 때라야 언론중재위원회와 계간 「언론중재」의 본래적 역할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반론·정정사건·언론판례’에만 국한하지 말고 ‘헌법, 공정거래법, 민법(불법

행위법), 형법(명예훼손법), 상법(회사법)’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난번 신문법 논쟁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및 점유율에 관한 핵심쟁점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공정거래법 전문가’의 발언은 전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간 「언론중재」는 거칠게 말해보면, ‘언론·언론학·저널리즘 영역’에 국한되기도는 ‘언론영역을 대상으로 삼는 언론법제론 고유영역’으로 그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헌법분야만 하여도 ‘두루뭉술한 헌법전문가’라면 이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미국 현실에 대응하는 연방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처럼, 우리에게도 한국현실에 대응하는 한국 헌법 제21조에 정통한 언론법제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기왕에 말씀드리건대, 다음과 같은 질문도 계간 「언론중재」가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한국의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그들의 헌법 교과서에서는 언론 자유의 제도적 측면, 편집권 독립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다가도 정작 한국 언론 현실의 문제에서는 그들의 교과서와 다르게 발언하는지 그들에게 물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왜 우리사회에 헌법 제21조 3항 ‘신문의 기능’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 한편이 없는지 따져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즉 계간 「언론중재」는 한국의 언론 현실과 한국의 언론 규범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대화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계간 「언론중재」의 대외적 창구역할입니다. 계간 「언론중재」는 때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언론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계간 「언론중재」가 감당해야 했을 적극적 발언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에 관한 한 ‘언론중

재위원회의 법률안'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었음에도 안타깝게도 그 자체로는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비교법적 차원의 체계적 소개부분'입니다.

다른 유용한 기회가 없는 우리 현실이기에 계간 「언론중재」의 지면이야말로 비교법제적 요소를 고려한 각국 언론법제의 체계적 소개·정리에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미국 일변도의 미국식 판례·법제의 단편적 소개 작업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결과적으로 한국 언론법제를 크게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각국의 특수성 - 예컨대, 연방 국가인지 분권국가인지, 중앙집권국가인지 아닌지, 그들의 헌법이념·언론 법체계 및 재판제도, 배달·유통, 시장체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법적 배경과 시·공간적 배경 등 - 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버리는

식의 평면적인 소개 작업에 치중한다면 한국 공동체와 한국 언론법제의 발전을 무척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계간 「언론중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언론사나 현업기자들을 상대할 기회를 폐가져본 필자의 체험으로는 계간 「언론중재」가 더 널리 배포·구독된다면 우리 사회의 언론법제 환경이 좀 더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계간 「언론중재」의 100호 특집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언론법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매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